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16 선고 2022가단954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도진석

변 론 종 결 2023. 6. 2.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2.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0. 2. 11. 접수 제208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518549호로 제기한 구상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6. 7. 18. ‘C은 원고에게 15,510,46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5.부터 2006. 7. 1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030714호로 제기한 구상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6. 11. 24. ‘C은 원고에게 18,716,107원과 그 중 15,561,413원에 대하여 2005. 9. 30.부터, 3,154,694원에 대하여 2006. 3. 8.부터 각 2006. 11.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판결을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나. D은 2019. 12. 11.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E, F이 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

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12. 11.자로 피고, E, F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0. 2.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9분의 2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저축하여 망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여 왔고, 망인이 2003. 11.경 수술을 받은 이래 투병생활을 하였고, 피고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망인을 부양하여 왔으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간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면서 피고 주장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합의가 함께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5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혼인기간 중 1992. 9.경부터 1996. 10.경까지 약 4년간 회사에 근무하였고, 요양보호사로서 2009. 11.부터 2013. 9.경까지 기간 중 29개월간 망인에 대한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가정에서 직접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로 가족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 17, 18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군재정관리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망인이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1997. 8. 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0. 4.경 퇴직하면서 퇴직수당으로 44,322,09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0. 4. 14.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점, 망인은 2000. 5.부터 사망 무렵까지 매월 1,702,660원 ~ 3,032,560원에 달하는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왔고, 퇴직 이후인 2001. 2.경부터 2018. 7.경까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를 넘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피고의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이 1995. 11.경 혼인하여 분가한 이래 혼인생활이 순탄치 아니하여 피고와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지내 왔고, 망인의 사망 당시에야 비로소 장례식장을 찾아왔는데, C은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고급 차량을 타고 와서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 피고와 C은 모녀 지간인 점, ㉡ C은 2002. 10. 23.부터 2003. 5. 8.까지, 2007. 10. 26.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한 바 있고, ㉢ C의 자인 G은 2002. 10. 23.부터 2020. 3.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을 제9호증(녹취록)의 기재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C 지분에 관한 부분이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경사 스톱 20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 5068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84.7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50684.5분의 45.2540

